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영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55 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유영하·이헌승·김기웅

권영세 · 우재준 · 강선영

이인선 • 박성훈 • 임종득

김정재 · 박덕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맹본부의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 보(塡補)받을 수 있으나,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 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, 공정거래 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,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 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제4항, 제41조 및 제4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25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7조의2제4항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 및 제115조"를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"로 한다.

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⑤ 제4항의 죄는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「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 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42조 본문 중 "제41조"를 "제41조(제4항은 제외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의2(손해배상책임) ① ~	제37조의2(손해배상책임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	4
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	
경우 <u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</u>	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
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 및 제	관한 법률」 제110조부터 제11
<u>115조</u> 를 준용한다.	<u>5조까지</u>
제41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41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
	이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
	의하여 준용되는 「독점규제
	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
	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
	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
	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
	금에 처한다.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의 죄는 제37조의2제4
	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
	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
	한 법률」 제112조제1항에 따
	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
	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<u>④</u> · <u>⑤</u> (생 략)	<u>⑥</u> ⋅ <u>⑦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
제42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 가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과 같음)
제42조(양벌규정)
<u>제41조(제4항은 제외한다)</u>
•